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55
----------	-------

제출년월일 : 2025.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천문과학에 대한 국민의 지식 향상과 과학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마포365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위치(안 제1조~제3조)

- 마포365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

나. 업무 및 기능,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안 제4조~제5조)

다.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료 등, 이용료 감면 등(안 제6조~제9조)

라. 이용의 제한, 행위의 제한 및 손해배상 등(안 제10조~제12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바. 준용(안 제14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4. 17. ~ 2025. 5. 7.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2025년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의결(2025. 5.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과학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지식 향상과 과학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마포365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마포365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일체의 물품 및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천문대 관측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천문대는 마포365구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 내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우주 관측 등의 체험을 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과학 의식 제고

2. 천문·우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구민과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의 장 제공
4. 천문·우주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천문현상이 일어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정상 개관하고,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관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① 천문대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한 후 이용자 및 수강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가 관측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그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 또는 이용자 등의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이용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5. 20명 이상 단체관람의 인솔자(20명당 1명)
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 등은 천문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 등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이용자 등이 천문대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천문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 등(제8조제1항 관련)

1. 이용료

이용료 기준			
대 상	구 분	요 금	비 고
초·중·고등학생	7세~18세	1,000원 이하	※ 20명 이상 유료 단체 관람 시 인솔자 무료 (20명당 1명)
대학생, 성인	19세~64세	2,000원 이하	

2. 수강료

수강료 기준			
대 상	구 분	요 금 (1회, 1시간 기준)	비 고
초·중·고등학생	7세~18세	10,000원 이하	
대학생, 성인	19세~64세	15,000원 이하	

※ 수강료와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5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나. 수입발생 요인: 조례안 제8조(이용료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마포365천문대 운영에 따른 비용은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매년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계기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2025년은 6개월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이용료	6,720	13,440	13,440	13,440	13,440	60,480
	○ 수강료	35,640	71,280	71,280	71,280	71,280	320,760
	소계(a)	42,360	84,720	84,720	84,720	84,720	381,240
세출	○ 운영비	74,300	148,600	148,600	148,600	148,600	668,700
	소계(b)	74,300	148,600	148,600	148,600	148,600	668,700
□ 총 비용(a-b)		-31,940	-63,880	-63,880	-63,880	-63,880	-287,4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31,940	63,880	63,880	63,880	63,880	287,460
	세외수입 등	42,360	84,720	84,720	84,720	84,720	381,240
	소 계	74,300	148,600	148,600	148,600	148,600	668,700

5. 덧붙이는 의견: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천문대 운영 방법에 따라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체육국 교육청소년과 유선후
연 락 처	02-3153-9942